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4. 11. 29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11. 15. 채우진 의원 외 5명

나. 회부일자: 2024. 11. 18.

다. 상정일자: 제272회 제2자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(2024. 11. 2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차해영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분류·보관·수거 등의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훼손 및 노후도에 따른 관리 강화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됨.

나. 주요내용

◦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관리대장 작성(안제9조의2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가)「폐기물관리법」

나)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3) 기타

가) 입법예고 : 2024. 11. 6 ~ 2024. 11. 12. (의견 없음)

나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해당없음.

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가. 조례 제정 배경

○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분류·보관·수거를 위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훼손과 시설 주변에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관리 강화를 통해 재활용가능 자원율을 높이고자 추진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○ 안 제9조의2제1항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의 유지관리와 정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리대장 비치·작성에 대해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.

○ 이에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훼손을 예방하고 주변 무단투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관리대장 비치·작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.

○ 다만, 생활계 유해 폐기물중 특정 폐기물에만 국한된 관리로 인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을 면밀히 계획해야 하겠음.

<표 1. 연도별 폐형광등·폐건전지 수거현황>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
폐형광등(개수)	486,450	429,570	395,162	327,943	252.900
폐건전지(톤)	23.760	32.350	34.850	32.670	33.150

<표 2. 동별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현황(총104개소)>

행정동	철거	신품교체	설치개소	행정동	철거	신품교체	설치개소
공덕동	2	-	8	서교동	2	2	10
아현동	-	-	1	합정동	1	1	8
도화동	1	-	6	망원1동	-	3	6
용강동	1	1	3	망원2동	-	-	4
대흥동	2	2	10	연남동	-	2	11
염리동	-	-	1	성산1동	2	3	13
신수동	1	2	6	성산2동	2	-	6
서강동	1	1	8	상암동	-	3	3

<그림 1. 폐형광등 수거함 관리실태>

[관 계 법 령]

「폐기물관리법」

제14조의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"생활계 유해폐기물"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3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)

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,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·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·보관·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(公表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21.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21.>[전문개정 2008. 3. 21.]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